

# 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호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92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6월 30일

발 의 자 : 박호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순자, 최판술, 문영민, 유광상, 김인호, 황준환, 김제리, 서윤기, 김용석(도봉), 김구현, 이병해, 황규복, 유동균, 장홍순, 김기대, 김상훈, 오봉수, 강구덕, 김영한, 이신혜, 이윤희, 김창원, 김혜련, 이현찬, 유찬중, 김동윤, 박진형, 박기열, 신원철 의원(29명)

## 1. 제안이유

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 (제7조).

나.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(제9조의2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자치구와의 협력)”을“(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)”으로 하고,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의2제2항 중 “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자치구와의 협력)</b></p> <p>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,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9조의2(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7조(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)</b></p> <p>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,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의2(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